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5. 7.

사건번호 2013년 형제89520호, 89632호, 119522호, 2014년 형제35375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조기룡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 I. 피의자
- 3.다,아 곽상도
  - 4.다,아 김기현
  - 5.가,다,아 김태희
  - 8.사 송주원
  - 9.아 조이제
  - 10.마,아 진익철
  - 11.다,아 김재춘
  - 12.다,아 정통령
- II. 죄 명
- 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마.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 사. 국가정보원법위반
  - 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III. 주 문

- 3. 피의자 곽상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 4. 피의자 김기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5. 피의자 김태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증거불  
충분하여 혐의없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8. 피의자 송주원 국가정보원법위반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9. 피의자 조이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10. 피의자 진익철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각하
11. 피의자 김재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인정되지 아  
니하여 혐의없음
12. 피의자 정통령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개인  
정보보호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2014형제35375호]

##### 1. 김기현(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경정)

가. 2013. 6. 25.경부터 7. 2.경까지 사이에 채??, 임○○의 주민조회 관련 정보, 운  
전면허조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정당한 감찰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013. 6.월 하순경 대통령실 특별감찰반의 일원으로 외부근무 중 채동욱 검  
찰총장의 처라고 주장하는 임○○이라는 여성이 사건을 해결해 주고 그 아들인 채  
○○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임○○과 채○○의 신원 확인  
을 위하여 2013. 6. 하순경 반포지구대와 통의파출소에서 채○○과 임○○의 주민  
조회를 실시하였고, 분당경찰서에서 임○○의 사진을 입수하고, 안산상록경찰서  
에서 임○○의 전입일자를 확인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첩보 내용을 지휘부에 보고하자 근거없는  
소문인 것 같아 더 이상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여 첩보를 존안 처리하였다가  
2013. 9. 6. 조선일보 보도 이후 검찰에 이첩하였다.

○ 2013. 10. 중순경 위와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의 우리 청 2014형제 2285호, 2828호 사건 검찰수사관 작성 수사보고서의 기재 내용, 2013. 10. 중순경 임정순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 첩보가 입수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의 기재 내용, 당시 조선일보 보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우리 청 2014형제7236호, 38555호 사건의 불기소결정문 및 위 임○○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공소 제기한다는 취지의 우리 청 2014형제 2285호, 2828호 사건의 공소장 기재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 판단컨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연혁, 구성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의자가 수집한 것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71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위반 첩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피의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의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직 경찰관들의 진술은 피의자가 현직 경찰관 신분을 밝혔거나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라는 점을 아는 상태에서 협조를 요청하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여기에 앞서 본 내사 착수 경위 및 그 결과를 더해 보면, 피의자가 그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나 제72조 위반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

○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범죄 혐의 없다.

나. 2013. 6. 25.경부터 7. 2.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임정순과 채도경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의자가 당시 검찰총장 관련 비위를 감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범죄 혐의 없다.

## 2. 송주원(국가정보원 직원)

가. 2013. 6. 10.경 직권을 남용하여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여 국가정보원법위반

나. 2013. 6. 11. 직권을 남용하여 서초구청 불상자로부터 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전달받아 국가정보원법위반

○ 피의자가 위와 같이 채○○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때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에서도 동일하다.

○ 피의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피의자, 조이제, 유영환의 각 진술 및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는 서초지역 공공기관 모임에서 만난 유영환, 조이제에게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협조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정보제공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피의자가 유영환이나 조이제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요청행위와 정보제공 사이에 직권남용죄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노3251 판결 참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범죄 혐의 없다.

## 3. 김태희[서초구청 가족관계팀장]

가. 법률에 근거한 사유가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피의자는 2013. 6. 11. 서초구청 행정자치국장 조이제의 지시로 채○○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라 조회한 정보를 그에게 제공함에 있어 피의자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 없다.

나. 2013. 6. 11. 14:47, 16:51경 채○○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 피의자가 위 일시경 채○○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조이제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직속상관인 조이제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제공한 것으로 피의자에게 직권남용에 있어 위법·부당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4. 조이제[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2013. 6. 11. 김태희로 하여금 채■■■■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채도경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의자가 위와 같이 김태희를 통해 채○○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송주원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인 김태희로 하여금 그 집행을 보조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0도13766 판결).

○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5. 진익철

가. 2013. 6. 11. 채■■■■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묵인하고 김태희와 조이제의 범행을 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나. 2013. 6. 11. 직위를 이용하여 구청장실 CCTV 영상을 미리 보고, 위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탕비실에 보관하는 한편, 국정원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 사건 수사기간 중 확보된 각종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고발사실과 같은 범죄혐의가 있음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 이 사건 고발을 각하한다.

#### 6. 광상도

가. 2013. 6. 25.경부터 7. 2.경까지 사이에 특별감찰반 소속 김기헌에게 지시하여 김기헌이 채??, 임○○의 주민조회 관련 정보, 운전면허조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앞서 1.기재와 같이 위 김기헌의 행위가 특별감찰반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피의자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벌요건인 부정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나. 2013. 6. 25.경부터 7. 2.경까지 사이에 직위를 이용하여 위 김기헌으로 하여금 임■■■■과 채■■■■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김기헌의 행위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 감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그 지시행위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범죄 혐의 없다.

7. 김재춘(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

가. 2013. 6. 24.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이병호, 유영환에게 순차적으로 요청하여 채○○의 아버지 직업을 물었으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피의자는 민정수석실의 요청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하여 채도경의 학교생활기록 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의자는 실제로 피의자가 제공받은 정보는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이병호, 유영환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의자의 변명을 뒤엎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범죄 혐의 없다.

나. 2013. 6. 24.경 직위를 이용하여 유영환으로 하여금 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하도록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의 부탁을 받아 이에 협조 차원에서 정보를 요청한 것이므로 피의자의 요청행위를 들어 위법?부당한 권한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8. 정통령(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

가. 2013. 6. 27.경 김기현의 부탁을 받고 김금찬, 한동남에게 순차적으로 요청하여 임■■■■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를 제공받아 김기현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피의자가 위와 같이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는 김기현의 부탁을 받아 임■■■■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를 조회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감찰업무 협조 요청에 응하여 지원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피의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범죄 혐의 없다.

나. 일자불상경 직위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의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의자는 단지 임■■■■의 가입자격 정보만 제공받아 전달하였지 진료기록 관련 정보는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위 일시경 건보공단의 조회 내역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의자의 변명을 뒤엎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의자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감찰반의 김기현의 부탁을 받고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의자가 건보공단 관계자에게 정보조회를 요청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어느 모로 보나 증거불충분하여 범죄 혐의 없다.